

주요 중재 규칙에서 병합조항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Consolidation Clauses in the Leading Arbitration Rules

이춘원*

Lee, Choonwon

〈목 차〉

- I. 서
- II. 중재의 병합에 관한 주요 중재기관의 규정
- III. 병합 조항의 비교 분석
- I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중재의 병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런던 국제 중재 법원 , 싱가포르 국제 중재센터, 스톡홀름 상공 회의소, 홍콩 국제중재센터

*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I. 서

오늘날 상거래를 통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여러 사람이 다면적이고 중첩적으로 관여하며, 이와 관련하여 특정 주체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 당사자만으로는 분쟁을 중국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분쟁해결에 참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¹⁾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다수인 상거래 또는 그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이 다수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의 통일과 신속을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소의 병합 등이 행하여지는 것처럼, 중재에서도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 관련되는 중재절차를 병합시킴으로써 여러 개의 분쟁을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련 중재판정사이의 불일치 또는 모순되는 결정을 방지할 수 있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²⁾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진행되므로, 원칙적으로 중재의 병합을 하려면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중재의 병합을 약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더라도 특정 중재기관을 선정한 경우에 그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중재의 병합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중재의 병합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단일 중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경험상 매우 드물다.³⁾ 또한 중재의 중재기관 규칙에서는 중재의 병합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중재의 병합을 원하는 당사자들은 중재권한이 있는 판정부를 설득하여 중재의 병합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재의 병합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병합에 대한 동의의 흠결로 인한 당사자 자율성 침해 및 중재기관의 임명 방법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재 판정부는 중재의 병합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다수의 중재기관이 당사자의 청구를 반영하여 병합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병합요건을 완화하여 병합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중재 규정을 개정하였다. 2012년 ICC 규정, 2014년 LCIA 규정에서 병합 조항을 도입하였으며, 스톡홀름 상공 회의소(Stockholm Chamber of Commerce)는 2017년 SCC 중재규정에서 병

1)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 워크로드의 43%는 다자간의 중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 세계 중재 사례의 약 40%가 양 당사자이외에 제3자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https://iccwbo.org/> 검색일: 2020. 1. 15.).

2)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중재를 병합함으로써 전반적인 중재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분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중재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3) Palmer, R., "Arbitrating construction disputes - the problem of consolid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UPDATE, 2016. 7. 20.

합규정을 강화하였다.⁴⁾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분쟁을 보다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재규정을 개발하고 있으며,⁵⁾ 복잡한 다자간 분쟁에서 중재기관으로 자리 매김하려고 관련 규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ICC, LCIA, SIAC, HKIAC, SCC, 스위스, ACICA, UNCITRAL 규정과 같은 주요 중재기관의 중재규정에서의 병합 조항을 소개하고 규정 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II. 중재의 병합에 관한 주요 중재기관의 규정

주요 중재 기관들은 최근에 중재 규정을 개정하여, 중재의 병합조항을 신설하거나 병합에서 당사자의 동의 여부, 중재가 병합되는 상황 등 기존 병합조항의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

1. 국제상공회의소의 규정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중재법원은 1923년에 설립이 되었으며, 국제상거래 중재에 있어서 가장 선호도가 높고 권위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 ICC 규정⁶⁾은 중재의 병합과 관련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에서 제9조의 다중계약(Multiple Contracts), 제10조의 중재의 병합(Consolidation of Arbitrations)을 도입하였다. 제9조에서 ‘제6조 307항 및 제23조 4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계약으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청구는 그 청구가 동일 중재합의에 근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병합을 허용하고 있다.⁷⁾ 제10조에서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 계류(pending)되어 있는 2 이상의 중재를 병합할 수 있는데,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a) 당사자들이 병합에 동의한 경우이다. (b) 모든 청구가 동일한 중재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이다. (c) 서로 다른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 청구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⁸⁾ 제10조 (b)에서 당사자가 여

4) <https://www.clydeco.com/insight/article/institutional-approaches-to-multi-party-and-multi-contract-disputes-in-arbitration> 검색일: 2020. 1. 15.

5) SIAC는 개정된 중재 규정 초안을 발표하여 복수 계약 분쟁 및 통합에 대한 특정 조항을 도입하고 추가 당사자의 가입에 관한 조항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6) ICC 중재 규정에 따른 중재는 1958년 뉴욕 협약 등 국제조약과 국내 중재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는 중립 중재 재판소의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이어지는 공식적인 절차이다. 현재 ICC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2017년 개정규정이다. 2017년 개정에서는 수수료의 범위를 축소하고 효율적인 중재와 신속한 절차를 위하여 개정하였다(Arbitration rules In force as from 1 March 2017, ICC, 2019. 5.).

7) ICC Arbitration Rules Article 9(Multiple Contract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6(3) - 6(7) and 23(4), claim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more than one contract may be made in a single arbitration,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claims are made under one or more than one arbitration agreement under the Rules.

러 명인 2개 이상의 중재가 동일한 중재계약에 의한 경우와 (c)에 따라 ‘동일한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in connection with the same legal relationship)’ 발생한 여러 계약에 의한 중재가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 병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모두 상대방 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있다.

ICC 법원은 1명 이상의 중재자가 확정 또는 임명되었는지 여부와 동일인이거나 다른 사람이 확정 또는 임명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관련이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병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재를 병합할 때에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는 먼저 시작된 중재로 병합된다.⁹⁾

2. 런던 국제중재법원의 규정

런던 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은 1892년에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재 기관이다. LCIA는 2014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 LCIA 규정에서 중재의 병합 조항을 도입하였다. 중재 판정부(Arbitral Tribunal)는 다음 2가지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하면 중재의 병합을 허용할 수 있다. 첫째, 제22.1조 (ix)에 규정된 경우로서, LCIA 규칙에 따라 둘 이상의 중재를 병합하기로 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고 LCIA 법원이 승인을 청구한 경우이다. 둘째, 제22.1조 (x)에 의한 경우이다. 2개 이상의 중재의 청구가 동일한 중재계약에 의한 경우이거나, 동일한 분쟁 당사자 간의 양립 가능한 중재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병합할 수 있다. 다만, 중재에 대해 중재 판정부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거나 이미 형성된 경우에는 판정부가 동일한 중재인으로 구성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22.1조 (x)에서는 동일 당사자와 관련된 둘 이상의 중재의 병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당사자와 관련된 둘 이상의 중재의 병합을 허용하지 않는다.¹⁰⁾

-
- 8) ICC Arbitration Rules Article 10(Consolidation of Arbitrations) The Court may, at the request of a party, consolidate two or more arbitrations pending under the Rules into a single arbitration, where: a) the parties have agreed to consolidation; or b) all of the claims in the arbitrations are made under the same arbitration agreement; or c) where the claims in the arbitrations are made under more than one arbitration agreement, the arbitrations are between the same parties, the disputes in the arbitrations arise in connection with the same legal relationship, and the Court finds the arbitration agreements to be compatible.
- 9) ICC Arbitration Rules Article 10(Consolidation of Arbitrations) In deciding whether to consolidate, the Court may take into account any circumstances it considers to be relevant, including whether one or more arbitrators have been confirmed or appointed in more than one of the arbitrations and, if so, whether the same or different persons have been confirmed or appointed. When arbitrations are consolidated, they shall be consolidated into the arbitration that commenced first, unless otherwise agreed by all parties.
- 10) LCIA Arbitration Rules Article 22.1 (ix) to order, with the approval of the LCIA Court, the consolidation of the arbitration with one or more other arbitrations into a single arbitration subject to the LCIA Rules where all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s to be consolidated so agree in writing; (x) to order, with the approval of

제22.6조는 아직 중재 관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LCIA 법원에 중재의 병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제22.1조 (ix) 및 (x)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고, LCIA 법원이 중재 관정부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LCIA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 후, LCIA 규칙의 적용을 받고 동일한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동일한 중재 합의에 따라 시작된 둘 이상의 중재가 단일 중재로 통합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¹¹⁾

3. 싱가포르 국제 중재센터의 규정

싱가포르 국제 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IAC)는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Maxwell Chambers에 위치해 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SIAC Rules 2016 제6조, 제8조에서 병합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SIAC Rules의 제6조, 제8조는 다른 중재기관의 규정보다 병합을 널리 허용하고 있다. 병합규정은 제8조에 규정되었으나 제6조와 함께 파악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은 제6조에 따라 중재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복수 계약 또는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에서 2이상의 중재의 병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중재가 시작된 후에는 제8조에 따라 중재의 병합을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는 2개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은 “① 원용하는 중재합의별로 각각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와 동시에 제8.1조에 따라 중재절차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② 원용하는 각각의 중재합의와 해당 계약을 밝히고 제8.1조의 중재절차 병합 조건이 어떻게 충족되어 있는지 기술하여 모든 중재합의에 대하여 단일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¹²⁾ 중재의 병합 신청은 중재 관정부의 구성 전후에 따라 2가지로 나눈다.

the LCIA Court, the consolidation of the arbitration with one or more other arbitrations subject to the LCIA Rules commenced under the same arbitration agreement or any compatible arbitration agreement(s) between the same disputing parties, provided that no arbitral tribunal has yet been formed by the LCIA Court for such other arbitration(s) or, if already formed, that such tribunal(s) is(are) composed of the same arbitrators;

- 11) LCIA Arbitration Rules Article 22.6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Articles 22.1(ix) and (x), the LCIA Court may determine, after giving the partie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state their views, that two or more arbitrations, subject to the LCIA Rules and commenced under the sam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same disputing parties, shall be consolidated to form one single arbitration subject to the LCIA Rules, provided that no arbitral tribunal has yet been formed by the LCIA Court for any of the arbitrations to be consolidated.
- 12) SIAC Rules 2016, 6.1 Where there are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more than one contract, the Claimant may: (a) file a Notice of Arbitration in respect of each arbitration agreement invoked and concurrently submit an application to consolidate the arbitrations pursuant to Rule 8.1; or (b) file a single Notice of Arbitration in respect of all the arbitration agreements invoked which shall include a statement identifying each contract and arbitration agreement invoked and a description of how the applicable criteria under Rule 8.1 are satisfied. The Claimant shall be deemed to have commenced multiple arbitrations, one in respect of each arbitration agreement invoked, and the Notice of Arbitration under this Rule 6.1(b) shall be deemed to be an application to consolidate all such arbitrations pursuant to Rule 8.1.

첫째, 제8.1조에 따라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사무국(Registrar)에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즉 제8.1조에 의하면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① 모든 당사자가 병합에 동의 한 경우, ② 중재의 모든 청구가 동일한 중재 합의에 근거한 경우 ③ 중재 합의가 모순이 없으며, (i) 분쟁이 동일한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ii) 분쟁이 주요계약과 그 보조계약으로 구성된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iii) 분쟁이 동일한 거래나 연속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둘 이상의 중재절차를 하나로 병합하기 위한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¹³⁾ 중재 판정부가 구성된 후에는 SIAC 사무국에 제8.1조에 의한 병합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는 제8.7조에 따라 중재 판정부에 병합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SIAC 법원은 제8.4조에 따라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에 회부된 사건의 정황을 참작하여 제8.1조에 의한 중재절차 병합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¹⁴⁾

둘째, 제8.7조에 따라 중재 판정부의 구성된 후 중재 판정부(Tribunal in the arbitrations)에 병합을 신청하는 것이다. 즉, 중재 판정부가 구성된 후에는 “① 모든 당사자가 병합에 동의하는 경우, ② 중재절차에 있어 모든 청구들이 동일한 중재합의문에 근거하고, 각 중재절차를 심리하기 위하여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거나 혹은 다른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③ 관련 중재합의문 간에 모순이 없으며, 각 중재절차를 심리하기 위하여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거나 혹은 다른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았고, 분쟁이 (i) 동일한 법적 관계나 (ii) 원계약과 부수적인 계약(들)으로 구성된 계약들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iii) 동일한 거래나 연속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2개 이상의 중재절차를 하나로 병합하기 위한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¹⁵⁾

13) SIAC Rules 2016, 8.1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any Tribunal in the arbitrations sought to be consolidated, a party may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Registrar to consolidate two or more arbitrations pending under these Rules into a single arbitration, provided that any of the following criteria is satisfied in respect of the arbitrations to be consolidated: (a) all parties have agreed to the consolidation; (b) all the claims in the arbitrations are made under the same arbitration agreement; or (c) the arbitration agreements are compatible, and: (i) the disputes arise out of the same legal relationship(s); (ii) the disputes arise out of contracts consisting of a principal contract and its ancillary contract(s); or (iii) the disputes arise out of the same transaction or series of transactions.

14) SIAC Rules 2016, 8.4 The Court shall, after considering the views of all parties, and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decide whether to grant, in whole or in part, any application for consolidation under Rule 8.1. The Court's decision to grant an application for consolidation under this Rule 8.4 is without prejudice to the Tribunal's power to subsequently decide any question as to its jurisdiction arising from such decision. The Court's decision to reject an application for consolidation under this Rule 8.4, in whole or in part, is without prejudice to any party's right to apply to the Tribunal for consolidation pursuant to Rule 8.7. Any arbitrations that are not consolidated shall continue as separate arbitrations under these Rules.

15) SIAC Rules 2016, 8.7 After the constitution of any Tribunal in the arbitrations sought to be consolidated, a party may apply to the Tribunal to consolidate two or more arbitrations pending under these Rules into a single arbitration, provided that any of the following criteria is satisfied in respect of the arbitrations to be consolidated: (a) all parties have agreed to the consolidation; (b) all the claims in the arbitrations are made

중재의 병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 관정부는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회부된 사건의 정황을 참작하여 제8.7조에 의한 중재절차 병합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¹⁶⁾ 중재절차 병합 신청이 제8.9조에 따라 승인된 경우, 중재법원은 중재절차 병합이 승인되기 전에 선정된 중재인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¹⁷⁾

당사자는 제8.1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사무국에 병합신청을 하였으나 이러한 병합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각하되더라도, 당사자는 다시 제8.7조에 따라 중재 관정부에 중재절차의 병합을 신청할 수 있다.¹⁸⁾ 다른 중재기관의 규정들은 동일한 기관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만을 허용하는 데에 대하여,¹⁹⁾ SIAC 규정에서는 사무국에 병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중재 관정부에 병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원적으로 구성한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중재절차 병합 신청이 제8.4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승인된 경우,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았거나 중재판정부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는 중재인을 지명하거나 중재판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되, 제14조에 의한 중재인 기피 신청권은 침해 받지 않는다.²⁰⁾

4. 홍콩국제중재센터(HKCIAC)의 규정

홍콩 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는 1985년에 설립되어, 아시아에서 중재 및 기타 형태의 대체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성립 이후 9,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였다.²¹⁾ HKIAC는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

under the sam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same Tribunal has been constituted in each of the arbitrations or no Tribunal has been constituted in the other arbitration(s); or (c) the arbitration agreements are compatible, the same Tribunal has been constituted in each of the arbitrations or no Tribunal has been constituted in the other arbitration(s), and: (i) the disputes arise out of the same legal relationship(s); (ii) the disputes arise out of contracts consisting of a principal contract and its ancillary contract(s); or (iii) the disputes arise out of the same transaction or series of transactions.

16) SIAC Rules 2016, 8.9 The Tribunal shall, after giving all parties the opportunity to be heard, and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decide whether to grant, in whole or in part, any application for consolidation under Rule 8.7. The Tribunal's decision to grant an application for consolidation under this Rule 8.9 is without prejudice to its power to subsequently decide any question as to its jurisdiction arising from such decision. Any arbitrations that are not consolidated shall continue as separate arbitrations under these Rules.

17) SIAC Rules 2016, 8.10 Where an application for consolidation is granted under Rule 8.9, the Court may revoke the appointment of any arbitrators appointed prior to the decision on consolidation.

18) SIAC Rules 2016, 8.4

19) 스위스 규칙 제4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20) SIAC Rules 2016, 8.12. Where an application for consolidation is granted under Rule 8.4 or Rule 8.9, any party who has not nominated an arbitrator or otherwise particip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its right to nominate an arbitrator or otherwise participate in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such party to challenge an arbitrator pursuant to Rule 14.

21) <https://www.hkiac.org/about-us>; <https://www.hkiac.org/about-us/statistics> 검색일: 2020. 1. 15.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 국내 중재(Domestic Arbitration) 등을 행하고 있다. 기관중재와 관련하여 HKIAC 중재규정(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과 UNCITRAL 중재 규정에 따른 중재를 위한 HKIAC 절차(HKIAC Proced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Arbitration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에 따르고 있다. 중재의 병합과 관련하여 2018 HKIAC 중재규정 제28조에 규정되었는데, 이 규정은 2013년 규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2018년 규정에서 약간 수정되었다.

제28.1조에 의하면 HKIAC는 “① 당사자들이 병합에 합의한 경우, ② 모든 신청이 동일한 중재합의에 근거한 경우, ③ 서로 다른 중재합의에 의한 신청이지만, 모든 중재절차에서 공통된 법리적 또는 사실적 문제이고, 동일한 거래 또는 관련 거래에서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권리에 대한 신청으로 그 중재합의들이 양립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병합 신청이 있으면, 당사자들과 선정된 중재인들이 협의하여 2 이상의 중재절차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²⁾ 제28.1조에 따른 중재의 병합에는 두 중재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상황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여러 당사자가 단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여러 당사자가 여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HKIAC가 두 개 이상의 중재절차를 병합하기로 결정한 경우, 모든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HKIAC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먼저 개시된 중재절차에 병합되어야 한다.²³⁾

중재절차를 병합하는 결정은 병합 결정 이전에 관련 중재절차에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내린 명령이나 행위의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다.²⁴⁾

HKIAC가 중재절차를 병합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련 중재절차의 모든 당사자들은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HKIAC는 이미 선정 내지는 확정된 중재인의 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HKIAC는 당사자들의 중재인 지명 여부와 관계없이 병합된 중재절차에서의 중재 판정부를 선임한다.²⁵⁾

22) 2018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28.1 HKIAC shall have the power, at the request of a party and after consulting with the parties and any confirmed or appointed arbitrators, to consolidate two or more arbitrations pending under these Rules where: (a) the parties agree to consolidate; or (b) all of the claims in the arbitrations are made under the same arbitration agreement; or (c) the claims are made under more than one arbitration agreement, a common question of law or fact arises in all of the arbitrations, the rights to relief claimed are in respect of, or arise out of, the same transaction or a series of related transactions and the arbitration agreements are compatible.

23) 2018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28.6 Where HKIAC decides to consolidate two or more arbitrations, the arbitrations shall be consolidated into the arbitration that commenced first, unless all parties agree or HKIAC decides otherwise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HKIAC shall communicate such decision to all parties and to any confirmed or appointed arbitrators in all arbitrations.

24) 2018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28.7 The consolidation of two or more arbitrations is without prejudice to the validity of any act done or order made by a competent authority in support of the relevant arbitration before it was consolidated.

25) 2018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28.8 Where HKIAC decides to consolidate two or more arbitrations, the parties to all such arbitrations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their right to designate an

5. 스톡홀름상공회의소 중재기관의 규정

스톡홀름상공회의소의 중재기관(Arbitration Institute of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에서 현재 채택된 중재 가이드라인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된 것이지만,²⁶⁾ 중재의 병합은 2017년 SCC 중재규정에서 개정된 것이다. 2017년 개정에서 제15조의 병합규정을 강화하고, 제13조의 병합조항과 제14조의 복수계약조항을 다루었다.

SCC 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요청하면 SCC이사회는 “① 당사자가 병합에 동의한 경우 ② 모든 청구가 동일한 중재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③ 별개의 중재합의에 따라 청구된 경우이지만 동일한 거래이거나 일련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이사회가 중재합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간주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시작된 중재를 보류중인 중재와 병합할 수 있다.²⁷⁾

SCC 이사회는 중재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병합을 할 수 있는데, ②처럼 동일한 중재계약에서 여러 당사자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③처럼 다중계약에서 여러 당사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15조 2항은 SCC 이사회는 병합여부를 결정할 때에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① 계류 중인 중재의 단계 ②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 ③ 기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²⁸⁾ SCC 이사회가 중재의 병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5조 3항에 따라, 이미 선임된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²⁹⁾

제14조 1항은 당사자가 단일 중재에서 둘 이상의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³⁰⁾ 제14조 2항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모든 주장이 단일 중재에서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SCC가 제12조

arbitrator, and HKIAC may revoke any confirmation or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HKIAC shall appoint the arbitral tribunal in respect of the consolidated proceedings with or without regard to any party's designation.

26) 2019년 10월에 수정된 내용은 사건 관리, 비용, 일정, 행정 비서 임명 및 사용, VAT 문제, 최종 결정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해 중재자가 자주 제기하는 질문을 다루었으며, SCC 중재에 사용되는 새로운 보안 디지털 통신 및 파일 공유 플랫폼인 새로운 SCC 플랫폼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7) SCC Arbitration Rules 2017 Article 15(Consolidation of arbitrations) (1) At the request of a party the Board may decide to consolidate a newly commenced arbitration with a pending arbitration, if: (i) the parties agree to consolidate; (ii) all the claims are made under the same arbitration agreement; or (iii) where the claims are made under more than one arbitration agreement, the relief sought arises out of the same transaction or series of transactions and the Board considers the arbitration agreements to be compatible.

28) SCC Arbitration Rules 2017 Article 15(Consolidation of arbitrations) (2) In deciding whether to consolidate, the Board shall consult with the parties and the Arbitral Tribunal and shall have regard to: (i) the stage of the pending arbitration; (ii) the efficiency and expeditiousness of the proceedings; and (iii) any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29) SCC Arbitration Rules 2017 Article 15(Consolidation of arbitrations) (3) Where the Board decides to consolidate, the Board may release any arbitrator already appointed.

30) SCC Arbitration Rules 2017 Article 14(Multiple contracts in a single arbitration) (1) Parties may make claim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more than one contract in a single arbitration.

(i)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명백하지 않은 한, 단일 중재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¹⁾

SCC 이사회는 제14조 3항에 따라 단일 중재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와 협의하고 “(i) 청구가 이루어진 중재 합의가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 (ii) 구제책이 동일한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에서 발생하는지 여부 (iii)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 (iv) 기타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³²⁾ SCC 이사회가 단일 중재로 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 관할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법원이 한다.³³⁾

6. 스위스 규정

스위스는 정치적 중립적인 국가로서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건설엔지니어협회(FIDIC), 국제항공운송협회, 스포츠중재법원(CAS/TAS),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및 FIFA 및 UEFA와 같은 주요 국제 스포츠 조직이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지난 1세기 동안 스위스는 국제중재의 선호 장소 중 하나였다. 스위스에서 중재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으로 스위스 국제중재규정(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일반적으로 Swiss Rules이라고 한다.), 스위스 국제중재법(Swiss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스위스 국내중재법(Swiss Domestic Arbitration Law), 스위스 계약 및 기업법(Swiss Contract and Corporate Law), 중재자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Arbitrators)이 있다. 이 중에서 스위스 국제 중재 규정은 국제 민사법과 관습법 및 스위스 국내 사건을 유연하고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들은 스위스 또는 해외에서 중재인을 자유롭게 지명하고, 해당 법률, 절차 언어, 중재지 및 자체 법률 고문을 선택할 수 있다. 중재가 스위스에 행하여지는 경우에 당사자는 스위스 중재법이 제공하는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³⁴⁾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중재의 병합에 관해서 스위스 국제중재규정 제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조 1항에

31) SCC Arbitration Rules 2017 Article 14(Multiple contracts in a single arbitration) (2) If any party raises any objections as to whether all of the claims made against it may be determined in a single arbitration, the claims may proceed in a single arbitration provided that the SCC does not manifestly lack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pursuant to Article 12 (i).

32) SCC Arbitration Rules 2017 Article 14(Multiple contracts in a single arbitration) (3) In deciding whether the claims shall proceed in a single arbitration, the Board shall consult with the parties and shall have regard to: (i)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s under which the claims are made are compatible; (ii) whether the relief sought arises out of the same transaction or series of transactions; (iii) the efficiency and expeditiousness of the proceedings; and (iv) any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33) SCC Arbitration Rules 2017 Article 14(Multiple contracts in a single arbitration) (4) In all cases where the Board decides that the claims may proceed in a single arbitration, any decision as to the Arbitral Tribunal's jurisdiction over the claims shall be made by the Arbitral Tribunal.

34) Swiss Chambers' arbitration institution (<https://www.swissarbitration.org/Arbitration/Arbitration-Rules-and-Laws> : 검색일 2020. 1. 15.).

의하면 스위스 중재 법원(SAC)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나아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둘 이상의 중재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AC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중재(당사자가 여러 명인 단일 계약 또는 당사자가 여러 명이고 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를 포함)도 병합할 수 있다. 제4조에서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와 중재인이 협의하여 SAC가 '사건 사이의 연결' 및 '진행 상황' 등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병합을 결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4조 1항은 중재병합의 경우 당사자가 중재자를 지명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SAC는 중재자의 임명을 취소하고 스위스 규정 섹션 II(중재 재판소의 구성)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⁵⁾

7. 호주 국제상업중재센터(ACICA)의 규정

호주 국제상업중재센터(Australian Centr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CICA)는 국제적으로 상업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5년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된 호주 국제분쟁해결 기관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ACICA 규정 제14조에 병합 조항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 2.5조에 의하여 제14조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발효된 날 이전에 중재 합의가 체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³⁶⁾

제14.1조에서 “(a) 당사자들이 통합에 동의한 경우 (b) 중재의 모든 청구가 동일한 중재 합의에 근거하는 경우 (c) 서로 다른 중재합의에 의한 신청이지만 당사자가 동일하고, 모든 중재절차에서 공통된 법리적 또는 사실적 문제로서 동일한 거래 또는 관련 거래에서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권리에 대한 신청으로 그 중재합의들이 양립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ACICA 규정에 따라 보류중인 2개 이상의 중재를 ACICA가 병합할 수 있다.³⁷⁾ 제14.1조 (a) 및 (b)는 ICC 규정 제10조 (a) 및 (b)와 같은

35) 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Consolidation and Joinder Article 4 ① Where a Notice of Arbitration is submitted between parties already involved in other arbitral proceedings pending under these Rules, the Court may decide, after consulting with the parties and any confirmed arbitrator in all proceedings, that the new case shall be consolidated with the pending arbitral proceedings. The Court may proceed in the same way where a Notice of Arbitration is submitted between parties that are not identical to the parties in the pending arbitral proceedings. When rendering its decision, the Court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circumstances, including the links between the cases and the progress already made in the pending arbitral proceedings. Where the Court decides to consolidate the new case with the pending arbitral proceedings, the parties to all proceedings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their right to designate an arbitrator, and the Court may revoke the appointment and confirmation of arbitrators and apply the provisions of Section II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36) ACICA Rules 2.5 The provisions contained in Articles 14 and 15 shall not apply if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concluded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2016 version of these Rules came into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는 ICC 규정 제10조 (c)와 유사하지만, 범위가 좁다. 즉, '모든 중재에서 법률 또는 사실에 관한 공통된 문제'와 ICC 규정의 '동일한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과 비교할 때에,³⁸⁾ 중재의 병합에 관한 ACICA 규정은 HKIAC 규정과 유사하지만, 제14.1조 (c)의 범위가 더 좁아서 동일한 당사자사이의 중재에만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는 병합될 수 없다. ACICA는 2017년 5월 1일부터 ACICA 규정 2016에 따른 병합에 대한 의사 결정을 위한 의정서 및 중재자에 대한 챌린지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간하였다.

8. UNCITRAL Rules

UNCITRAL 규정에는 중재절차의 병합에 관한 조항이 없다. UNCITRAL 실무그룹은 중재의 병합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이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임의중재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한 의문과 병합조항의 적용범위로 인해 병합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³⁹⁾

Ⅲ. 병합 조항의 비교 분석

ICC, LCIA, SIAC, HKIAC, SCC, 스위스, ACICA 중재규정에 병합 규정이 있으나, 규정의 범위와 운영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병합 규정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병합 신청자와 병합에 대한 동의

ICC, SCC, SIAC, HKIAC 및 ACICA의 중재 규정을 보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

37) ACICA Rules 14.1 Upon request by a party, ACICA may consolidate two or more arbitrations pending under these Rules into a single arbitration, if: (a) the parties have agreed to the consolidation; (b) all the claims in the arbitrations are made under the same arbitration agreement; or (c) the claims in the arbitrations are made under more than one arbitration agreement, the arbitrations are between the same parties, a common question of law or fact arises in both or all of the arbitrations, the rights to relief claimed are in respect of, or arise out of, the same transaction or series of transactions, and ACICA finds the arbitration agreements to be compatible.

38) ICC interprets the phrase 'the same legal relationship' broadly. See the discussion of ICC cases in Lara M Pair & Paul Frankenstein, *The New ICC Rule on Consolidation: Progress or Change?*, 25 *Emory Int'l L. Rev.* 1061, 1075 (2011).

39) Caron, David D. & Caplan, Lee M.,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58,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당사자는 계류 중인 여러 개의 중재에 대하여 병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⁰⁾ SCC, SIAC 및 HKIAC 규정과 달리, ICC와 ACICA 규정은 2이상의 중재 합의에 따라 청구되는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 사이의 중재이어야 하며, 여러 명의 당사자 사이의 여러 개의 계약으로 행하여지는 중재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재의 병합에 있어서 LCIA 조항이 가장 제한적이다. 다른 당사자와 관련된 LCIA 규정에 따른 절차의 병합은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동일한 당사자와 관련된 두 개 이상의 절차의 병합은 다른 중재에 중재 관정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거나 이미 형성된 경우에는 중재인이 동일한 경우에 병합될 수 있다. 스위스 규정은 다른 규정과 차이가 있다. 제4.1조는 SAC가 중재 통지에 근거하여 병합을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가 병합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제4.1조의 광범위한 범위에도 불구하고 SAC 규정과 해석은 모두 SAC가 병합에 제한적이며, 당사자가 병합신청을 한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⁴¹⁾

ICC, SCC, SIAC, HKIAC 및 ACICA 규정은 둘 이상의 중재를 병합하기 위해 신청자의 상대방 또는 다른 계류 중인 중재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LCIA 규정은 모든 당사자가 여러 당사자와 관련된 둘 이상의 중재를 병합하는 데 동의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동일한 중재 계약 또는 호환 가능한 중재 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둘 이상의 중재를 병합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SAC는 기술적으로 스위스 규정에 따라 병합을 위한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당사자가 신청할 때 둘 이상의 중재의 병합만 고려한다.

2. 병합의 신청의 시기와 결정기관

중재의 병합을 신청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SIAC, HKIAC, SCC, 스위스, ACICA 규정에는 제한을 하지 않는다. 다만 SIAC 규정에서는 중재 관정부가 구성된 후에는 중재 관정부에 병합 신청을 하여야 하며 SIAC 사무국에 병합 신청을 할 수 없다. SIAC 사무국이 중재 관정부보다 병합신청에 대한 인용을 비교적 용이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병합 신청의 시기적 제한은 없으나, 신청이 늦을수록 병합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ICC 법원은 병합 신청을 고려할 때 1명 이상의 중재인이 하나 이상의 중재에서 확인 또는 임명되었는지 여부와, 동일하거나 다른 사람이 확인 또는 임명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40) ICC Rules, Art. 10; SCC Rules, Art. 15.1; SIAC Rules, Rules 8.1 and 8.7 for applications to the SIAC Court prior to constitution of any of the tribunals in the arbitrations sought to be consolidated, and to the arbitral tribunal, once constituted; HKIAC Rules, Art. 28.1; and ACICA Rules, Art. 14.1.

41) Stackpool-Moore, Ruth, "Joinder and Consolidation : Examining Best Practice in the Swiss, HKIAC and ICC Rules", in Nathalie Voser(ed.), 10 Years of 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SA Special Series No 44, Juris, 2016. p.28.

ICC 규정 사무국 안내서는 ICC 법원이 중재인의 사임 또는 합의에 의한 ICC 법원의 철회 없이 단일 판정부를 구성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재인이 임명된 경우에는 중재의 병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당사자의 최종 결과는 중재인이 둘 이상의 절차에서 확인될 때까지 ICC 규정에 따라 병합에 일시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다. LCIA 규정도 다수 당사자를 포함하는 병합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다른 중재를 위해 중재 판정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동일한 중재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병합이 가능하다.

ICC, HKIAC, SCC, 스위스, ACICA 규정에서는 각 중재기관은 중재인이 선임되기 전이나 선임된 후 및 판정부의 형성 여부에 관계없이 병합 신청을 결정한다. 반면에 LCIA와 SIAC에서는 판정부의 성립 진후에 따라 병합신청에 대한 판단기관이 다르다. LCIA 법원과 SIAC 법원은 중재 판정부의 형성 전에 병합 신청을 결정하고, 중재 판정부가 형성된 후에는 판정부가 병합 신청을 결정한다.

3. 신청서의 내용

ICC, LCIA, HKIAC, SCC, 스위스, ACICA 규정에서는 병합 신청 내용에서의 필요한 사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HKIAC Practice Note는 병합 청구 내용 및 청구에 대한 의견에 대한 필요 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SIAC 규정은 HKIAC Practice Note와 비슷한 방식으로 병합을 위한 내용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SIAC 제8.2조 및 제8.8조에서 각각 관련 사례 참조 번호, 연락처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제8.1조(SIAC 사무국) 및 제8.7조(중재 판정부)에 따라 모든 당사자와 그 대리인 및 지명 또는 임명된 중재인 등 신청서 내용에 대한 필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신청인이 판정부의 구성, 사실의 일반적인 문제, 법률 또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여 중재 절차, 계류 중인 중재의 현재 진행 상황 및 병합 절차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 등 의사 결정자가 병합신청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4. 중재 절차의 병합여부의 결정에서 고려 요소

ICC, LCIA, SIAC, HKIAC, SCC, 스위스, ACICA의 중재 규정이 모두 병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다. ‘중재 당사자가 병합에 합의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재의 병합을 인정하며, ‘모든 중재신청이 동일한 중재계약에 근거한 경우’도 대체적으로 중재의 병합을 인정한다. 그러나 중재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중재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 SIAC, HKIAC, SCC, 스위스 규정은 해당 중재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거나 다른 중재 계약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

를 병합할 수 있다. 그러나 ICC, LCIA, ACICA 규정은 이에 대하여 제한적이다. ICC 규정은 제10조 (c)에 의하면 2 이상의 중재 합의에 따라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가 같은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중재의 병합이 가능하다. 중재의 대상인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여야 ICC 법원은 중재 합의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ACICA 규정 제14.1조 (c)는 ‘동일한 법률관계’가 달리 청구가 ‘거래 또는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또는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는 중재의 양쪽 또는 모두에서 발생’, ‘호환 가능한’ 중재 합의 표현은 ICC, LCIA, SIAC, HKIAC, SCC, ACICA 규정의 병합 조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중재계약에서 중재 언어, 중재인 임명에 대한 메커니즘,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 수 등을 서로 달리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한 중재계약은 양립할 수 없다.⁴²⁾

중재 합의에서 일부 문제를 빠뜨린 경우, 예컨대 중재인 수 또는 중재언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중재 합의서에서 동등한 명시적 요구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관련 계약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⁴³⁾ 이것은 다중 계약 상황에서 가능한 한 당사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중재 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각 규정에 따른 병합 규정은 각 규정에 따라 계류 중인 중재에만 적용되므로, 일부 중재 계약에서 잠재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LCIA 규정은 중재에 대해 중재 판정부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거나, 중재 판정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판정부가 동일한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합을 허용하고 있다.

각 중재기관의 중재규정은 중재의 병합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구성 여부, 전문가 의견, 계류 중인 중재의 진행 상황, 병합에 의한 중재절차가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 여부 등 관련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한다.

5. 중재 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의 개시

ICC 규정에 의하면 중재가 병합될 때 중재는 먼저 시작된 중재부로 병합되고, LCIA 규정에 따르면 중재는 동일한 중재 판정부인 경우에 한하여 병합이 허용된다. SIAC, HKIAC, SCC, 스위스, ACICA 규정에 의하면 각 중재 기관은 이미 임명된 중재인의 선임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병합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중재 판정부를 새로 임명

42) 관련 판례 및 해설을 검토 하여, ‘① 양립할 수 없는 위치(incompatible seats) ② 언어가 호환되지 않는 경우(incompatible languages) ③ 양립할 수 없는 기관을 선택(incompatible choice of institutions) ④ 장점 또는 절차상 관련되는 법률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incompatible applicable law either on the merits or procedurally) ⑤ 중재인의 수, 자격, 선택절차가 다른 경우(different number, qualification, or selection procedures for arbitrators)’에는 2개의 중재 합의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Pair, L. M. & Frankenstein, P., “The New ICC Rule on Consolidation: Progress or Change?”, *Emory Int’l L. Rev.* 25, 2011, pp.1061-1077).

43) Webster, Thomas H. & Michael Buhler, *Handbook of ICC Arbitration: Commentary, Precedents, Materials*, Sweet & Maxwell, 4th ed., 2018. at paras 6-49 and 6-50.

할 수 있다. SIAC, HKIAC, 스위스, ACICA 규정에는 중재의 병합을 할 때에 당사자의 중재인 지명권(또는 중재판정부의 구성 참가)의 포기가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병합 절차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구성에서, 모든 당사자가 평등하게 취급되기 위한 것이다.

ICC 법원은 병합 신청을 판단할 때에, 각각의 중재에서 서로 다른 중재인이 임명되었는지 여부와 중재인이 동일하다면 다른 중재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ICC 규정에 사무국 안내서의 조건을 적용하면 ICC 규정에 따라 중재인이 1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확정될 때까지 중재의 병합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이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LCIA에서는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다른 중재에서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병합이 가능한 것이다.

병합으로 각각의 중재 절차가 병합되더라도, 별개의 중재로 취급한다. 따라서 각각 중재는 명시된 중재 요청 날짜에 따라 시작된다. 또한, 중재 판정부는 상황에 따라 모든 중재에 대해 한 번에 판정을 하거나 각각 중재에 대해 별도의 판정을 할 수 있다.

IV. 결론

주요 중재규정에서 중재의 병합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면, 다자간 및 복수 계약과 관련된 중재를 다루는 모범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적 합의는 없다. 그러나 ICC, LCIA, SIAC, HKIAC, SCC, 스위스, ACICA 규정은 모두 수인의 당사자 간의 분쟁 및 다수의 계약이 혼재된 법률관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중재절차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CC, LCIA, SIAC, HKIAC, SCC, ACICA 규정의 병합 조항은 기본 당사 계약의 중재 계약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각 당사 계약의 중재 계약에서 중재 의석, 중재인 수, 중재인 임명, 중재인 자격 및 중재 언어와 같은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내용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각 중재 기관의 중재 규정을 살펴보면 중재의 병합에 대하여 ICC, LCIA 및 UNCITRAL 규정은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스위스, SCC, HKIAC 및 ACICA 규정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경우에 따라 당사자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SIAC, HKIAC, SCC, 스위스, ACICA 규정은 허용 가능한 신청자, 필요한 동의, 신청 기간⁴⁴⁾ 및 신청이 허용되는 환경과 관련하여 병합에 있어서 가장 널리 인정한다. SIAC 규정 제6조, 제8조의 SIAC의 병합 조항은 2 이상의 중재절차의 병합을 위해 특히 광범위한 체제를 제공한다.

중재의 병합은 다자간 중재에서 전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나, 이러

44) Subject to the comments in ss 5.8 and 6.3.6 above on the more restrictive approach to multiple party, multiple contract arbitrations under the ACICA Rules, Art. 14.1(c).

한 이점은 개별 당사자마다 다를 수 있다. 복잡한 상거래를 하는 일부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과 사이에서만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거래 및 분쟁의 작은 부분에 관여하는 당사자는 중재의 병합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가 전체 거래 또는 프로젝트에서 제한된 역할만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과의 계약 관계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밀 정보의 거래 또는 프로젝트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중재의 병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중재의 병합과 관련하여 주요 국제 중재기관은 그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으나, 당사자의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하여 그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achand, F. & Gélinas, F.(eds.), *The UNCITRAL Model Law after 25 Years: Global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New York: Juris Publishing Inc, 2013.
- Caron, David D. & Caplan, Lee M.,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Macmahon, B.(ed.), *Multiple Party Action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Palmer, R., “Arbitrating construction disputes - the problem of consolid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UPDATE*, 2016. 7. 20.
- Pair, L. M. & Frankenstein, P., “The New ICC Rule on Consolidation: Progress or Change?”, *Emory Int’l L. Rev.* 25, 2011, pp.1061-1077.
- Stackpool-Moore, Ruth, “Joinder and Consolidation : Examining Best Practice in the Swiss, HKIAC and ICC Rules”, in Nathalie Voser(ed.), *10 Years of 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SA Special Series no 44, Juris, 2016. pp.15-34.
- Webster, Thomas H. & Michael Buhler, *Handbook of ICC Arbitration: Commentary, Precedents, Materials*, Sweet & Maxwell, 4th ed., 2018.

참고 법령

ACICA Rules

2018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ICC Arbitration Rules.

LCIA Arbitration Rules.

SCC Arbitration Rules 2017.

SIAC Rules 2016.

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참고 사이트

<https://iccwbo.org/> 검색일: 2020. 1. 15.

<https://www.clydeco.com/insight/article/institutional-approaches-to-multi-party-and-multi-contract-disputes-in-arbi> 검색일: 2020. 1. 15.

<https://www.swissarbitration.org/Arbitration/Arbitration-Rules-and-Laws> : 검색일 2020. 1. 15.

<https://www.hkiac.org/about-us>; <https://www.hkiac.org/about-us/statistics> 검색일: 2020. 1. 15.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Consolidation Clauses in the Leading Arbitration Rules

Lee, Choonwon

In the case of multiple commerce contracts in commerce, as well as multiple contracts related to it, a solution for the merging of arbitration proceedings is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uniformity of dispute resolution. Since the arbitration proceedings are based on the parties' agreement, no merging of two or more arbitration proceedings may transpire unless all parties agree. Claims of merging in arbitration proceedings lead to problems such as lack of party autonomy, resulting from lack of consent of the parties to merging, and how to appoint an arbitrator in a multilateral arbitration proceeding. Many of the major arbitration bodies have recognized the significant benefits of the terms of consolidation, and have recently revised the Arbitration Rules to include or extend existing clauses to reflect the needs of the parties. This study introduces the merging provisions of several selected major arbitration rules, such as the ICC, Switzerland, SCC, LCIA, SIAC, HKIAC, ACICA, and UNCITRAL rules, and looks at the mai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rules.

Key Words : consolidation of arbitration,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